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모시다 복지용구 | 부산광역시 금정구

본 안내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, 모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제3조·제5조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.

1. 계약기간

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,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
2. 계약목적

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으로 한다.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하며,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
구분	공단부담	본인부담	내역
일반	85%	15%	100% 중 85%를 공단이 지원, 15%는 본인부담
보험료 감경대상자	91%	9%	100% 중 91%를 공단이 지원, 9%는 본인부담 (보험료 순위 25% 초과~50% 이하인 자)
의료급여자	94%	6%	100% 중 94%를 공단이 지원, 6%는 본인부담 (의료급여, 차상위, 생계곤란, 보험료 25% 이하)
기초수급자	100%	0%	100% 중 100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(1)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/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(2)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(2)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(3)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- (4)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
(5)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5. 계약의 해제

가.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(1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(2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나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문의처: 모시다 복지용구 010-2929-4747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13, 1층
본 게시문은 모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갱신됩니다.